

노회의 기원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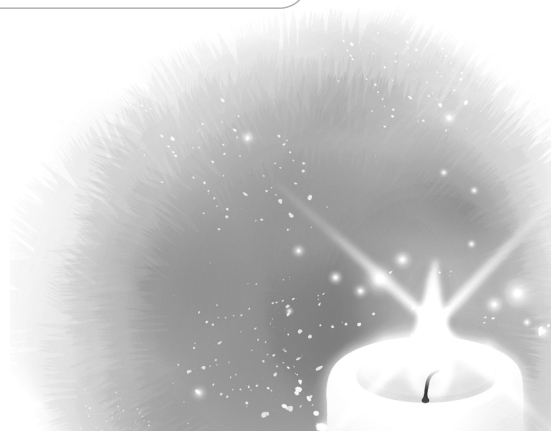
The Origin and Role of the Presbytery in Presbyterian Churches

우병훈

고신대 신학과 조교수

목 차

1. 노회의 기원 | 137
 - 1.1. 성경적 기원 | 137
 - 1.2. 교부 시대의 기원 | 140
 - 1.3. 종교 개혁 시대의 기원 | 143
 - 1.4. 장로교 역사에서의 기원 | 148
 - 1.5. 한국 장로교 역사에서의 기원 | 157
2. 노회의 역할 | 160
 - 2.1. 목사 및 장로와 관련한 역할 | 160
 - 2.2. 개체교회 및 당회와 관련한 역할 | 162
 - 2.3. 총회와 관련한 역할 | 163
3. 결론: 노회의 사명 | 164



노회의 기원과 역할

교회의 역사에서 노회는 개별 지역교회들이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에 대하여 공교회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생하였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볼 때에 초기 형태의 노회는 개별 지역교회들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리와 권징 및 예배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성경적으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노회는 종교개혁기와 그 이후 시기에 매우 성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대에 노회들은 이단이나 부정확한 교리들을 경계하고,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도우며, 교회들의 연합과 화평을 도모하며, 개별 교회들에 대해 교회정치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발전하였다. 특별히 존 칼빈은 노회의 발전에 신학적으로 매우 크게 기여했다.

한국장로교회에서 노회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할 때가 많았다. 그리하여 노회가 교회분열의 원인이 되거나 교권주의를 더욱 성행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노회가 다음과 같은 본연의 역할에 힘쓴다면 성경적이며 동시에 개혁주의적인 원리에 충실한 노회가 되어 교회에 도움을 줄 것이다. 첫째, 노회는 개체교회들의 통일성과 선교를 증진시켜야 한다. 둘째, 노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체교회를 지도하여 성경적 진리를 보존해야 한다. 셋째, 노회는 목사 및 장로의 임직과 선교사 파송을 돕고, 그리고 목사와 장로의 상호 신뢰를 증진시켜야 한다. 넷째, 노회는 목사와 장로의 신학 재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노회는 지역교회와 총회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노회가 자신의 소임에 힘쓸 때에, 노회는 개별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하게 보존해 줄 것이다.

*The Origin and Role of the
Presbytery in Presbyterian
Churches*

주요어

노회의 기원, 노회의 역할, 장로교회, 한국교회, 존 칼빈

Abstract

The Origin and Role of the Presbytery
in Presbyterian Churches

Prof. Dr. Byunghoon Woo

The presbytery originated within church history to cope with problems that individual local churches could not solve by themselves. Early forms of the presbytery addressed a variety of questions about doctrines, discipleship, and worship that occurs commonly in local churches.

The presbytery developed very biblically during the Reformation and Post-Reformation eras. In those ages, presbyteries developed in various European countries to guard against heresy and inaccurate doctrines, to nurture and help pastors, to promote the unity and peace of churches, and to provide church political assistance to individual churches. In particular, John Calvin contributed greatly to the theological development of the presbytery.

In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the presbytery often carried out more dysfunctions than positive functions. Thus, the presbytery sometimes became the cause of division in the church or made it more clerical in a negative sense. But if the presbytery is committed to the following essential roles, it will become

a presbytery that is faithful to biblical and reformist principles so as to help the church.

First, the presbytery should enhance the unity and mission of the congregation. Second, the presbytery has to preserve biblical truth by leading the congregation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Third, the presbytery should help to ordain pastors and elders and to send missionaries and should promote mutual trust between pastors and elders. Fourth, the presbytery shall support the theological re-education of pastors and elders. Fifth, the presbytery has to be a link between local churches and the general assembly. When the presbytery is committed to its essential roles, it will preserve the independence of the individual church in a healthy manner rather than damage it.

Keywords | Origin of the Presbytery, Role of the Presbytery, Presbyterian Church, Korean Church, John Calvin

1. 노회의 기원

1.1. 성경적 기원

노회는 장로교 교회제도의 핵심적인 기관이다. 하지만 노회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¹⁾ 따라서 이 논문은 기존의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한편, 앞으로의 연구의 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기초적인 역사적·실천신학적 논문으로 기획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지역교회인 동시에 보편교회에 소속된 교회들이다. 예를 들어, 로마서를 받았던 “로마교회”는 아마도 3개에서 5개 정도의 가정에서 모였던 교회들을 가리켰을 것이다.²⁾ 그런데 그 교회들은 모두 지역교회인 동시에 보편교회의 일원이었다. 이처럼 서신서에서 “교회”라는 말이 사용될 때에는 일차적으로는 그 서신서를 받았던 교회를 생각해야 하겠지만, 많은 경우 보편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교회들 사이에 시찰이나 노회가 제도적으로 존재했다는 흔적은 없다. 사실 신약 성경 시대에는 시찰이나 노회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사도들이 살아 있어서 직접 교회를 지도했기 때문이다. 사도들은 개별 교회를 직접 목회하거나(예루살렘 교회의 경우), 지역교회들을 방문하거나(사도 바

1) 한 예로, 배광식, 『장로교 정치원리와 치리제도 형성에 관한 역사적 연구』(계명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에서는 “앤드류 멜빌의 제2치리서”를 다룰 때(66쪽)와 “웨스트민스터 정치조례”를 다룰 때(75쪽) 각각 한 페이지씩만 노회에 대해 주제적으로 언급한다. 노회에 대해서는 노회에 대한 장로교회 헌법에 대한 해설은 박윤신, 『헌법주석』(영음사, 1997), 제 10장(136-49쪽)을 보라. 그리고 고신 교단 헌법의 내용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해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2014)과 2011년 개정판 헌법 제 11장을 보라.

2) Douglas Moo, 『로마서 - NIV 적용주석』(*Romans [NIVAC]*,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2011), 1025, 1224, 1226.

울의 경우), 자신의 대리자들인 목회자들을 보내거나(디모데 파송),³⁾ 아니면 서신들을 통해서(바울서신, 공동서신 등) 교회의 제반 사항들을 지도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신약 시대에는 노회가 상시적 제도로서 필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지역교회들이 이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로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 교회들은 상호 회합을 가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예를 들어, 로마교회의 경우 하나의 교회가 인원이 많아져서 여러 가정교회들로 나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한다.⁴⁾ 이들 교회들은 서로를 잘 알았을 뿐 아니라, 서로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서 관련성을 지녔을 것이다.⁵⁾ 특히 개체교회가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교회들이 서로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사안에 대해서 교회들이 모여서 토론과 판단을 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서는 성경적 근거가 없지 않은데, 사도행전 1장 12-26절(사도 마티아 선출), 6장 1-6절(일곱 일꾼[집사직 초기 형태] 선출), 15장 1-31절(이방인 선교 지침을 결정한 사도와 장로들의 회의), 21장 17-26절(바울에 대한 예루살렘 노회의 권면)은 다양한 형태의 교회 회의가 이뤄졌고 그것은 사도들의 허용과 지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⁶⁾

-
- 3) (살전 3) [2]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테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 4) Moo, 『로마서 - NIV 적용주석』, 1226에서 더글라스 무는 “가장 부유한 기독교인의 가장 큰 집이라고 해도 7, 80인 이상이 모여 예배를 드릴 정도가 되지 못했으므로, 교인의 수가 그 이상으로 늘면 교인들이 가정 교회들로 나뉘어야 했을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따라서 원래 하나의 교회에서 분립된 것이므로 하나의 로마 가정교회 성도들은 다른 로마 가정교회 성도들을 잘 알았을 것이다.
- 5) 그것은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인사를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 6) 이 본문들에 대해서는 아래 책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보라. 임영호, 『사도행전에서의 선교와 교회성장』 (서울: 프라미스키퍼스, 2013).

이 중에서 사도행전 15장 2절과 21장 18절에는 당시 교회 대표들이 교회의 중요한 회의를 열어 안건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 본문에서는 사도들이 지도하던 교회의 대표인 장로들이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 의논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이방인 선교 정책과 관련해서 개체교회의 대표자들과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회의했다.

(행 15) [1]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3]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⁷⁾

이 본문에 대하여 그레고리 빌은 새 언약 시대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권세를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즉, 기독교 운동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모였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모습(행 4:5-23)과 기독교 내부의 중요한 주제를 판단하기 위해 모인 그리스도인 장로들의 모습(행 15:1-6)에서 두 장로들의 기능은 사실상 동일하다는 것이다.⁸⁾

사도행전 21장에도 역시 복음 전파를 위해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권면을 하고자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고, 적절하게 조언했다.

(행 21) [17]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18]

7) 이 글에서 성경 인용은 모두 개역개정판에서 인용한다.

8) G. K. Beale, 『신약성경신학』(A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김귀탁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3), 829. Cornelis Van Dam, 『성경에서 가르치는 장로』(The Elder, 김현수, 양태진 공역, 서울: 성약출판사, 2012), 제 2부도 함께 보라.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19]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로 이러한 본문들에서 우리는 노회의 가장 원시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⁹⁾ 다시 말하자면 하나의 사도단에서부터 생겨나게 된 교회들, 혹은
 하나의 교회로부터 분립하게 된 교회들이 서로 영적이고 유기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데서부터 우리는 이후에 역사적 과정에서 생겨나게 된 “노회”의
 시초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1.2. 교부 시대의 기원

교부 시대란 사도들이 죽은 이후부터 6세기 정도까지의 시대를 가리킨다.
 교부 시대에 이미 교회 회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교부들이 있었다.
 이처럼 노회 정치를 반대하여 제시되는 근거들은 유념할 부분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약 성경의 지역교회들은 모두 상호 간에 완전히 독립적이기 때문이
 다. 신약 성경은 교회들 간에 어떤 종류의 위계질서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별 지역교회는 그 정의(定義)상 교회로서 온전하다고 가르친다.
 성경은 지역교회들이 서로 간에 의존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둘째, 신약 성경에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시찰이나 노회에 대해서 명시적
 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고 해석하자면 시찰이

9) 이상의 내용은 Herman Bavinck, 『개혁교의학』 (Gereformeerde Dogmatiek, 박태현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4:510-11에서 많은 통찰들을 얻었으며 때로 내용을 비슷하게 인용하기도 했다.

나 노회는 등장하지 않는다.

셋째,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론에 따르면 교회 사이에 노회와 같은 연계성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지역교회의 독립성과 전적으로 모순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회를 반대하는 이들에 따르면, 교회들 간의 이러한 연계성은 지역교회 위에 존재하여 권위를 갖는 회의들을 도입함으로써 교회 안에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될 위계질서 및 계급의식과 더 나아가 폭정을 도입할 위험이 있다.¹⁰⁾

넷째, 실제로 노회의 역사를 볼 때에 그 유익성이 항상 가시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교회는 노회가 자주 온갖 다툼과 분리의 원인으로 드러나는 때가 종종 있었다고 말한다.¹¹⁾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나는 교회 회의의 유익한 결말을 본 적이 없다.”라고 벌써부터 말할 수 있었다. “모든 회의는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격언은 이미 교회사 초기부터 틀린 말이 아니었다.¹²⁾

하지만 이와 반대로 다른 이유들은 교회 회의의 필요성과 유익성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교부 시대에 교회 회의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단들의 공격” 때문이었다. 3세기와 4세기에 삼위일체론과 관련한 이단들이 많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첫째, 사벨리우스(약 215년경 활동)가 주장한 양태론(形態論, modalism, Sabellianism)¹³⁾과 둘째, 아리우스(250/256 - 336)가 주장한 성자의 종속론(從屬論, subordinationism)¹⁴⁾과 셋째, 사모사타의 바울이 주장

10) Joel Beeke and Mark Jones,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 (*A Puritan Theology*, 김귀탁 역, 부흥과 개혁사, 2015), 제39장(“교회 정치에 대한 청교도의 교리”)에서 후기 오웬의 회중주의적인 관점을 살펴보라.

11) Bavinck, 『개혁교의학』, 4:509.

12) 앞의 두 인용문들은 Bavinck, 『개혁교의학』, 4:510에서 재인용하였으나 바빙크 자신도 1차 문헌 각주를 제시하지 않았다.

13) 양태론이란, 한 분 하나님일 때로는 성부로, 때로는 성자로, 때로는 성령으로 양태(mode)를 바꾸어서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존재의 다른 양태 또는 측면이라고 보는 주장이다.

한 그리스도 범부론(The Samosatene, Psilanthropism, 基督唯人說)¹⁴⁾이다. 기독교회는 이러한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325년에 니케아에서 공의회를 열고 성자의 신성을 공적으로 선포하였다.¹⁶⁾ 그 이후에도 교회는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정립하기 위하여 니케아 공의회(325)에서부터 콘스탄티노플 공의회(381)에 이르는 기간 동안 활발하게 다양한 교회 회의들을 가졌다.

교회사의 여러 학자들과 경험들이 말해주듯이 교회 회의는 ‘교회의 존재를 위해’ 결정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노회나 총회가 없어도 개체교회는 존속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다면 노회나 총회가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명령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교회 회의와 노회와 총회 등의 교회 사이의 회합은 허용되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필요했음을 교부 시대의 역사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다.¹⁷⁾ 교부 시대뿐 아니라 그 이후의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우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노회의 존재를 마다할 이유가 없음을 알게 된다.

노회와 같은 교회들의 모임은 교회가 성경에서 배우고 지켜가야 할 교리와 권징과 예배를 서로 일치시키고, 교회가 마땅히 준수해야 할 질서와 평화와 사랑을 도모하며,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담당해야 할 공동의 관심사들을 성경적으로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초대 교회와 교부 시대의 역사가 분명히 말해 주는 바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노회와

14) 아리우스는 “성자는 없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유명한 말로써, 자신의 종속론을 설명하였다. 종속론이란 성자의 본질을 성부의 본질 아래로 종속시키는 견해를 말한다. 그렇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성자의 신성을 부인한다.

15) 범부론은 일종의 양자론으로서, 예수는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성을 양자로 취하셨을 적에, 신성이 생겨난 것이라 주장한다.

16) 김영재 편저, 『기독교 신앙고백』 (수원: 영음사, 2011), 48.

17)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 Bavinck, 『개혁교의학』, 4:510을 참조. 바빙크가 이 부분에서 다룬 것은 교부 시대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었다. 하지만 필자는 교부 시대에 적용해서 기술했다.

같은 교회의 직분은 아래와 같은 목적에서 필요하였다. 첫째, 직분자 선출을 위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였다. 둘째, 선교사들의 소명을 확인하고 파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였다. 셋째,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였다. 넷째,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였다.

노회와 같은 교회의 회의들은 목회자 직분의 계급화를 뒷받침하는 발판이 아니었다. 오히려 교부 시대의 역사를 보면, 교회 회의가 모든 비성경적인 권위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노회의 역사를 보자면 노회는 지역교회의 독립성을 오히려 유지해 줌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이나 분리, 교권주의나 특정 목사나 장로의 지배로부터 개체 교회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감당해 왔다. 노회는 노회에 속한 회원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체교회가 성경적 지원이 필요할 때 다른 교회들과 연계하여 돕는다. 그리하여 더 광범위한 회의들에 호소해야 할 사안이 있을 시에 개체교회와 그 회의들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우리가 교회사에서 발견하는 원리에 따르면, 노회는 분리와 다툼의 원인이 결코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된다. 오히려 노회는 여러 지역교회들 안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리와 권징 및 예배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성경적으로 해결해 준다. 노회는 이 모든 문제들에 관하여 가장 지혜로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중한 연구 및 조사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에 이르는 훌륭하고 안전한 수단이 되었다. 또한 노회는 개체교회들이 그러한 결정 사항들을 가장 잘 시행되도록 도와주는 방편이 되었다.

1.3. 종교 개혁 시대의 기원

개신교회는 로마교회와의 대결 속에서 교회론에 대한 발전을 많이 이루었다. 로마교회는 교회를 “가르치는 교회”(ecclesia docens)와 “배우는 교

회”(ecclesia discens)로 나누었다. “가르치는 교회”란 교황과 주교로 이뤄진 집단으로서, “교도권”(magisterium)을 가진다. 반면에 “배우는 교회”란 “가르치는 교회” 하위에 있는 신자들의 모임인데, 교회의 진리를 수납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사제들은 주교들의 권위 하에 있으므로 평신도들과 더불어서 “배우는 교회”에 속한다.¹⁸⁾

개신교회는 이상과 같은 로마교회의 구분을 거부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와 평교인의 구분을 완전히 철폐한 것은 아니었다.¹⁹⁾ 개신교회는 “집합적 교회”(ecclesia synthetica 또는 ecclesia collectiva)와 “대표적 교회”(ecclesia repraesentativa)의 구분이 있었다. 전자는 전체 신자들의 모임을 뜻한다. 후자는 말씀을 설교하고 교리를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뜻한다. 이 구분은 처음에는 루터파에 의해 즐겨 사용되었으나, 이후에 개혁파 역시 수용했다. 특히 개혁파는 “대표적 교회”를 단지 목회자나 교사들과만 동일시하지 않고, 교회의 다스림을 위한 장로들의 모임과 총회와도 동일시함으로써 발전을 보였다.²⁰⁾ 그렇지만 개신교회는 “집합적 교회”와 “대표적 교회” 사이의 위계질서를 로마교회처럼 부여한 것은 결코 아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²¹⁾

특히 개신교에서 노회 제도와 정치는 대체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역사에서 발전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²²⁾ 노회가 루터교회에도 등장했으나,

18) 이상의 내용은 아래 사전에서 발췌했다. Richard A. Muller,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Drawn Principally from Protestant Scholastic Theology*, 2nd ed. (Grand Rapids, Mich.: Baker Book House, 2017), 102.

19) 루터의 만인제사장직 교리를 오해해서 마치 개신교에서는 목회자와 평교인의 구분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아래 각주 38에서 루터의 만인제사장직 교리를 다룬 문헌들을 보라.

20) Muller,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2nd ed., 101.

21) Muller,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2nd ed., 102.

22) 이하의 내용은 Bavinck, 『개혁교의학』, 4:508-11(#517)에서 많은 내용을 가져왔으나 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수정하고 첨가했다.

루터교회에서는 노회가 다만 목사들만의 회집이었다. 특별히 루터파 교회는 장로직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정립된 신학이 매우 부족하다. 이와는 달리 개혁파는 노회 제도와 정치를 더욱 성경적으로 발전시켜갔다.

츠빙글리는 1528년 취리히에서 노회를 제정했는데, 이 노회는 도시와 지방의 설교자들과 시의회 몇몇 회원들로 구성된 시의회에 의해 소집되었다. 특별히 이 노회는 설교자들의 교리와 삶에 대한 불평거리를 숙고하고 해결해주는 과제를 맡았다.²³⁾

칼빈 역시 노회 제도에 적극적인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가 작성한 『교회 질서』 (*Ordonnances ecclésiastiques*)에서는, 설교자들이 상호 간의 교리와 삶을 감찰하기 위해 매 3개월마다 함께 모여야 한다고 규칙을 정했다. 게다가 1546년에는 해마다 행하는 교회 “시찰”을 도입했다.²⁴⁾ 프란츠 람베르트(Franz Lambert)는 1526년에 헤센(Hessen)을 위해 교회법을 작성했는데, 여기서 교회의 모임과 설교자들과 교회의 임명을 받은 대표자들로 구성된 노회가 채택되었으나 이 교회법은 실행되지 못했다.²⁵⁾

노회 정치는 프랑스 개혁교회에서도 상당히 일찍부터 생겨났다.²⁶⁾ 프랑스 개혁교회 정치는 서구 유럽과 그 외의 나라들의 국제적 개혁교회들에 의해 채택되고 수정되었기에, 장로교의 발전에 지극히 중요했다고 여러 학자들은 지적한다.²⁷⁾ 프랑스의 첫 번째 권징조례는 칼빈이 제네바 교회를 위해 작성한

23) Bavinck, 『개혁교의학』, 4:508.

24) <https://www.museeeprotestant.org/notice/les-ordonnances-ecclesiastiques-1541/>도 참조 (2017.11.8. 접속).

25) G. V. Lechler, *Geschichte der Presbyterial- und Synodalverfassung seit der Reformation* (Leiden: Noothoven van Goor, 1854), 14 이하.

26) Bavinck, 『개혁교의학』, 4:508. 바빙크는 이하의 진술에서 레홀러(G. V. Lechler)를 많이 의존한다. 하지만 그의 주장들은 보다 현대적인 연구에 의해 수정될 필요가 있어서 아래에서 보충했다.

27) Theodore G. van Raalte, “The French Reformed Synods of the Seventeenth Century,” in Martin I. Klauber, ed., *The Theology of the French Reformed Churches. From Henri IV to the Revocation of the Edict of Nantes* (Grand Rapids, MI: Reformed Heritage Books, 2014),

『교회 질서』와 아주 유사하다. 그것은 프랑스 개혁교회들에서 예전(禮典)이 칼빈의 모델과 가까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²⁸⁾ 처음에는 어떤 지속적인 교회의 위임 모임이나 항존하는 기관이 없었다. 1563년 리용에서 프랑스를 9개의 지역구로 나눴고, 각 지역구의 당회는 총회에 보낼 대표자들을 선출해야 한다고 정했다. 1581년에는 교리적 문제나 그 외 다른 문제들을 심의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20년 어간에 교회 정치 체계가 생겨났으며, 그것은 반계급적이면서도 권위를 임명하는 피라미드 시스템이라는 특징을 지녔다.²⁹⁾ 교회들이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일치의 필요성 때문에 1559년 5월 26일에 파리에서 첫 번째 노회가 소집되었고 공동의 신앙고백서와 교회법을 채택하여 연합했다.³⁰⁾ 프랑스 개혁교회는 지방 노회 외에도 콜로크(Colloques)가 있어서 설교자들이 매주 모여 신학적/실천적 주제를 가지고 토론했다.³¹⁾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총회”가 처음으로 발생했고, 이 총회는 지방 노회들을 도입했으며, 1572년에는 지방 노회와 당회 사이에 “시찰회”가 삽입되었다는 사실이다.³²⁾ 이런 노회 정치는 나중에 스위스, 독일, 잉글랜드,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등의 다른 개혁교회들에도 도입되었다.

스위스는 제네바, 베른, 로잔에서 콜로퀴(Colloguy) 혹은 클라스(Classse)가 있어서 성경 토론과 목사에 대한 치리권 행사를 위해 모임을 가졌다. 독일 엠덴에서는 코이투스(Coetus)라는 모임이 있어서 인근 설교자들이 모였다. 잉글랜드의 경우 여러 난민 교회들의 관계 유지를 위해 콜로키움(Colloquium)

제 3장.

28) Paul Wells, “Church Government in French Churches in the 17th Century,” 『갱신과 부흥』 제17호(2016): 122-49(134쪽에서 인용).

29) Wells, “Church Government in French Churches in the 17th Century,” 135-36.

30) Lechler, *Geschichte der Presbyterial- und Synodalverfassung seit der Reformation*, 69.

31)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해설』 (2014), 284n126(교회정치 제 359문).

32) Lechler, *Geschichte der Presbyterial- und Synodalverfassung seit der Reformation*, 81.

이라는 교회간 모임이 있었다. 네덜란드는 남부 지역의 경우 프랑스의 영향으로 여러 노회로 구분되고, 나중에는 여러 시찰로 구분되었다. 1517년 엠덴 총회와 1619년 도르트 총회에 이르면서 시찰회와 노회가 구성되어 있었다. 스코틀랜드는 1574년과 1578년 어간에 노회가 구성되었다. 1592년에 의회가 “제 2치리서”를 승인함으로써 장로교 정치제도인 당회, 노회, 대회, 총회를 기초로 하는 스코틀랜드 국가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했다.³³⁾

그런데, 이런 노회 제도는 머지않아 에라스투스파와 독립파 양쪽의 반대에 부딪혔다. 츠빙글리와 에라스투스파의 연관을 지닌 항변파는 교회의 권세를 정부에 양도했고, 이로부터 추론하기를 노회가 물론 허용된다고 할지라도, 노회가 무엇인가를 명령하거나 교회의 존재와 번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만일 노회가 개최된다면 소집, 파견, 의제의 결정, 회의 주재의 권한은 정부에 속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독립파는 재침례파 오류의 영향 아래 더 나아가 신자들의 각 그룹을 독립적으로 여기고, 모든 구속력 있는 시찰이나 노회와의 연계성을 거부했다.³⁴⁾

16-17세기에 나타난 노회 정치를 반대하는 견해는 수긍할 만한 점이 없지 않다. 우선, 신약 성경은 지역교회들이 독립적인 교회들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하나의 지역교회는 다만 공교회에 편입되어 있을 뿐이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교회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또한 신약 성경에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시찰이나 노회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언급도 없다.³⁵⁾ 물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접적인 전거(典據)들은 찾을 수 있으나, 명시적인 전거는 찾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노회의 존재는 개별 지역교회의 독립성 및 온전성과 모순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게다가 노회의 역사는 노회가 항상 유익하다고만 볼 수 없는 많은 전례들을 남긴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33)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해설』 (2014), 284n126(교회정치 제 359문).

34) Bavinck, 『개혁교의학』, 4:509.

35) Bavinck, 『개혁교의학』, 4:509 참조.

노회는 온갖 다툼과 분리의 원인으로 종종 드러나곤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회는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칼빈의 신학과 장로교 역사에서 노회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면 알 수 있다.

1.4. 장로교 역사에서의 기원

1.4.1. 칼빈 교회론의 특징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노회의 역할이다. 장로교회는 노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노회 제도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은 프랑스 개혁교회에서였지만, 노회 제도의 신학적 기초를 제공한 사람은 바로 칼빈이었다.

교회 조직을 보다 상황적 측면에서 구성했던 마르틴 루터와는 대조적으로, 칼빈은 교회 조직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첫째, 교회 조직은 그리스도의 주권 하에 직접적으로 놓여 있으며, 그 어떤 인간적 위계질서 하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성경에는 아주 명백한 교회 정치의 양식(pattern)이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칼빈은 루터의 두 왕국 이론 즉, 사회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사상을 루터보다 훨씬 일관성 있게 적용했다.³⁶⁾

칼빈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론을 주창하였다. 하지만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목사가 제대로 설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 말씀에 따른 교회 제도의 개혁까지는 많이 생각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루터 교회의 교회론을 보면 직분론이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루터로부터 기원한다고 볼 수 있다.³⁷⁾

36) Wells, "Church Government in French Churches in the 17th Century," 130에서 재인용.

37) 취약한 직분론은 루터 신학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나 루터파 신학자들 사이에서

하지만 칼빈은 그와 달랐다. 칼빈은 교회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보면서 유기체적으로 이해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로 보았다. 칼빈에게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돌되는 생각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칼빈은 교회 제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칼빈에 따르면 교회는 일종의 무정부주의와 결코 같지 않다. 오히려 그는 교회의 질서가 선출된 직분자들에 의해서 보증된다고 생각했다. 칼빈은 성경이 이러한 교회 질서에 대한 견해를 지시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것은 교황제로 남용되기 전까지 초대 교회에도 역시 존재했다고 보았다.³⁸⁾ 한 사람 혹은 한 경우가 특정 교회의 어떤 사역자를 임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칼빈은 교회나 목사단으로부터 판단할 권리를 빼앗는 것은 교회의 권세 즉 신적 권리(*jus divinum*)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칼빈에 따르면, 장로나 집사는 성경의 자격 요건들에 따라서 인정되어야 하며, 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칼빈이 지닌 이 견해는 그가 직접 원안을 작성했던 “라 로셴 고백문”(La Rochelle Confession [*Gallicana*], 1559)의 제 29항에 잘 나타나 있다.³⁹⁾ 그것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우리는 이 참된 교회가

흔히 관찰된다. 대표적으로 칼 바르트의 경우 개혁과 전통을 많이 수용하여 신학을 하고자 했으나, 그가 직분론을 다룬 부분을 보면 이러한 취약성이 아주 잘 드러난다. 특히 바르트는 장로직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38) Calvin, 『기독교강요』, IV.ii.3-4; iv.1.

39) “라 로셴 고백문”은 “The French Confession of Faith”, “Confession de La Rochelle”, “Gallic Confession of Faith”, “La Rochelle Confession of Faith” 등으로 불린다. 이 고백문은 프랑스 개혁교회들이 칼빈에게 신앙고백 작성에 대해 1557년에 문의했을 때, (논의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아마도) 베자와 비레의 도움으로 칼빈이 작성했다. 그리고 칼빈의 제자 드 샹디외(De Chandieu)가 35개 조항으로 최종 손질하여 완성했다. 이후에 실제로 이 고백문을 채택할 때에는 첫 두 조항을 6개로 확장했고, 그 결과 최종적 형태는 모두 40개의 조항이 되었다. 이 고백문은 1560년에 프랑수와 2세에게 박해를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서문과 함께 보내졌다. 이 고백문은 1571년 라 로셴 총회(제 7차 총회)에서 수용하기로 결정되었고, 독일에서는 1568년 베젤 총회와 1571년 엠덴 총회에서 인정되었다. James T. Dennison, Jr., Compiled, *Reformed Confessions of the 16th and 17th Centuries in English Translation: Volume 2, 1552-1566* (Grand Rapids, MI: Reformed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한다고 믿는다. 곧 목사들과 감독자들과 집사들이 있어서 참된 교리가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⁴⁰⁾

1.4.2. 칼빈의 직분론

루터는 1520년대 초에 만인제사장직 교리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는 1525년을 전후로 발생한 토마스 뮌처 사건(1524년)과 농민전쟁(1525년)을 겪으면서 그 교리를 약화시키거나 폐기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였다. 극단적인 자들이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면서 임의로 설교하거나 목사가 되는 폐단이 발생한 것이다. 이후에 루터는 목사의 임직을 보다 엄격하게 시행하였고, 그것에 위정자가 관할하도록 제한을 두게 되었다.⁴¹⁾

만인제사장직 교리의 이러한 폐단을 염두에 두었는지, 칼빈의 글이나 개혁 교회의 신앙고백서에서는 ‘만인사제직’이라는 용어나 교리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불링거가 작성한 ‘제2 스위스신앙고백서’에서만 ‘만인제사장’은 위계질서적 구조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평등함을 뜻하는 말이라고 해석하고 있을 정도이다.⁴²⁾

칼빈은 만인제사장직에 대해서 루터처럼 전개하는 대신에, 오히려 부씨의 영향을 받아서 직분론이 교회론에서 중요함을 깨달았다.⁴³⁾ 1541년과 1561년의 교회 헌법에서 칼빈은 네 가지 직분을 말한다. 목사(pastores), 교사

Heritage Books, 2010), 140-41.

40) Wells, “Church Government in French Churches in the 17th Century,” 131-32에서 재인용.

41) 자세한 내용은 우병훈, “루터의 만인 제사장직 교리의 의미와 현대적 의의,” 『신학논단』 87 (2017), 209-35; 우병훈, 『처음 만나는 루터』 (서울: IVP, 2017), 87-98, 155-160를 보라.

42) 김영재, 『한국기독교의 재인식』 (서울: 엠마오, 1994), 113.

43) Willem van't Spijker, 『칼빈의 생애와 신학』 (Calvin: Biographie und Theologie, 박태현 역, 부흥과개혁사, 2009), 131. 스페이커르는 “교회관에 있어서, 칼빈은 전적으로 부씨와 외콜람파디우스의 발자취를 따랐다.”고 말한다(앞 책, 130).

(doctores), 장로(presbyteri), 집사(diaconi)이다.⁴⁴⁾ 그러나 나중에 칼빈은 목사직 안에 교사직을 포함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삼중직의 직분론을 전개했다.⁴⁵⁾

1.4.3. 칼빈의 콩그레가시옹

칼빈은 목사들의 모임과 장로들의 모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목사들의 모임으로 “콩그레가시옹”(목사회)이라고 불리는 모임이 있었다.⁴⁶⁾ 목사회는 매주 금요일에 모였는데, 교회 법령이 명시하고 있다. 오전에는 성경연구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오후에는 교회 행정과 신학적 문제를 토론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 목사회를 칼빈은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⁴⁷⁾ 그래서 시골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아니면 반드시 참석해야 했는데, 한 달간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면 태만으로 여겨 견책에 회부될 정도였다. 물론 목회자 개인의 용납

44) 오토 베버, 『칼빈의 교회관』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 역, 서울: 이레서원, 2001), 65. 이 직분들의 기능을 서로 조화시키려는 칼빈의 시도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다고 맥그라스는 지적한다. Alister McGrath, *A Life of John Calvin: A Study in the Shaping of Western Culture* (Oxford: Wiley-Blackwell, 1993), 171. 하지만 맥그라스의 판단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5) 1561년에 나온 벨직 신앙고백서 30조에도 세 직분을 구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사역자 혹은 목사들과, 목사들과 함께 교회 회의(당회)를 구성할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어야 한다.” 1618년에 나온 도르트 교회정치 2조에서도 “세 직분이 구분되어야 한다: 말씀의 사역자, 장로, 집사. 어떤 목사들은 신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위해, 또 다른 목사들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구별된다”라고 적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 해설』(2014), 160.

46) “콩그레가시옹”에 대해서는 임종구, 『칼빈과 제네바 목사회』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5)의 곳곳을 참조하였다.

47) 중세와 종교개혁시대에 출판물 중에 교수가 직접 기록한 책은 오르디나티오라고 부르고, 학생이나 비서가 받아 적은 책은 레포르타티오라고 불렀다. 칼빈이 직접 출판물 목적으로 기록한 주석 즉 오르디나티오는 시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등이다. 이것은 1549년 이후 칼빈이 목회자 모임에서 함께 연구했던 성경들과 동일하다. 칼빈은 이 주석들을 목회자 모임의 준비로 사용했으며, 또한 역으로 목회자 모임이 이 주석들을 더욱 발전시키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레포르타티오 역시 오르디나티오 못지않게 원래 저자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가능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였다. 1536-1564년 사이의 제네바 목사회 명단을 보면 모두 72명의 목사가 참석한 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목사 외에도 목사회에는 평교인이었던 정부당국자들도 참석하였다.

목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목사 후보생을 심사하고 시험과 임직을 감독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매주 목요일에 모여 성경을 강론하고 교리를 토론하는 것이었다. 셋째는 목사들의 생활을 감독하는 것이었다. 넷째는 목사들의 임지를 추천하는 것이었다.

아주 정교한 계급제도 시스템이 칼빈이 만든 제도에도 역시 존재했다는 의심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칼빈이 원안을 작성했던 “라 로셴 고백문”의 제 30항은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보여준다. “우리는 모든 참된 목사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똑같은 권위를 가지며, 한 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평등한 권세를 가진다. 이에 따라 우리는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에 대해서 권위나 지배권을 가질 수 없다고 믿는다.”⁴⁸⁾ 제 31조는 이어서 어떤 사람도 교회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직분을 획득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교회의 책임 있는 자리에 사람을 세우는 방식은 선출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조항들에서 세 가지가 분명히 주장되어 있다. 첫째, 어떤 사역자도 다른 사역자 위에 군림하는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둘째, 어떤 교회나 교회 기관도 다른 교회 위에 권세나 권력을 가질 수 없다. 셋째,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선출로만 뽑힐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소명은 교회의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들 각각은 반계급적 질서원리를 “고백문의 지위(status confessionis)”에 달하는 수준에까지 올려놓는다고 폴 웰스는 잘 지적한다.⁴⁹⁾

48) Wells, “Church Government in French Churches in the 17th Century,” 132에서 재인용.

49) Wells, “Church Government in French Churches in the 17th Century,” 132에서 재인용.

1.4.4. 노회에 대한 칼빈의 견해

칼빈은 장로교 정치제도가 신약 성경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생각했다. 칼빈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두 본문은 사도행전 15장과 디모데전서 4장 14절이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흔히 “예루살렘 공의회” 혹은 “사도 회의”라고 불리는 장면이 나온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경우 율법의 어디까지 준수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 문제는 교회의 선교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안디옥 교회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대표를 예루살렘에 파송하였다. 사도행전 15장 6절을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라고 되어 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였던 것이다.

교회의 선교 정책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만일 안디옥 교회가 단독으로 처리했다면, 이것은 회중주의 교회론이 성경적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교회에서 파송한 교회 대표가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한 것을 보면, 노회(혹은 총회) 제도를 가지고 있는 장로교 정치제도가 더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장로의 회”(presbyterion, the body of elders)란 ‘장로들의 일단’ 혹은 ‘장로단’이란 말로서 지금의 노회(老會)에 해당했다. 이것을 보면 디모데는 노회를 통해서 안수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다.⁵⁰⁾

50) 물론 여기서 ‘안수 받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디모데가 목회자 직분으로 임직 받은 것을 뜻한다고 본다. 리더보스는 본문의 “프레스비테리온”이란 말을 “장로들의 모임”이라고 주석한다. H. N. Ridderbos, *Commentaar op het Nieuwe Testament, Pastrale Brieven* (Kampen: Kok, 1967), 125; 박윤선, 『헌법주석』, 136에서 재인용.

위의 두 본문에 근거하여 칼빈은 장로교의 정치 형태가 제도적 교회의 가장 성경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제네바에서 콩그레가시옹을 만들어 목사의 선출과 임직을 관할하고자 했던 것 역시 그런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로마교, 루터파, 재침례파의 교회 정치 형태를 모두 거부하고 장로교주의를 성경적인 제도 교회의 모습으로 주창하였다.⁵¹⁾ 그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장로교 정치제도가 로마 가톨릭의 교권주의와 재침례파의 방임적 개교회주의의 폐단을 막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다.⁵²⁾

칼빈은 또한 1546년 교회 “시찰”에 대한 규정을 교회정치에 넣었다. 그렇게 하여 제네바 지역의 교회들이 순수한 교리를 유지하고 권징을 올바르게 실행하도록 도왔다.⁵³⁾ 그렇다고 해서 칼빈이 개체교회를 노회가 지나치게 간섭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 칼빈은 개체교회의 양심적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칼빈이 노회의 교회 시찰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는 노회에 속한 교회들의 연합과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51) 이상규, “교회정치,” 『고신신학』 11 (2009): 197-235를 참조하라. 이 글은 “Presbyterianism and Politics in Korean Presbyterian Context”라는 부제(副題)를 달고 있다.

52) 칼빈은 국가의 정체(政體)를 설명할 때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를 제시하였다. 칼빈은 정부 형태에 있어서 왕정, 귀족정, 민주정을 제시하고서, 이 중에서 “귀족정과 민주정을 결합한 제도”가 다른 형태보다 더 낫다고 주장한다(『기독교강요』, 4.20.8).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인간의 타락성 때문이다. 즉, 공정하며 바른 생각만을 하는 자제력이 강한 왕은 아주 드물기 때문이며, 민중의 지배가 난동으로 타락하는 것은 가장 쉽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가 소수인의 당파로 타락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지만, 여러 사람이 정권을 운영한다면 그래도 타락한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비난하며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정부 형태 역시 “민주 정치에 가까운 귀족 정치”라고 해석한다(『기독교강요』, 4.20.8).

53)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해설』 (2014), 293(교회정치, 제 382문); 박운선, 『헌법주석』, 151-52.

1.4.5. 장로교 제도와 교회의 위계질서화 위협

칼빈은 말씀 중심의 교회관과 선택론에 근거한 교회론 때문에, 말씀의 사역자로서 목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는 것이라 가르친다. 개혁교회는 직분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직분자를 직분자로 세우는 사람은 무엇보다 목사이다(엡 4:11-12 참조). 이런 원리에서 장로교 교회론에서 목사는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고 목사단, 곧 노회에 속한 것으로 제도화되어 있다.⁵⁴⁾

장로교회에서 목사가 노회에 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일반 교인과는 제도적, 행정적 위치가 다르다. 다시 말하면 장로교회는 제도적으로 목사와 평교인 간의 구별이 있는 셈이다. 이런 구분은 가령, 당회장이 없는데 장로들만으로 당회가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역시 반영되어 있다.⁵⁵⁾

이처럼 목사와 평교인 사이의 구별은 장점과 동시에 단점을 지닌다. 장점은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의 설교가 독립성과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교회의 계층화 혹은 감독교회화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장로교회는 중세 로마교의 계층화된 감독교회를 반대했지만 목사와 평교인 간의 질서를 로마교의 사제주의(clericalism)와 구분하여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⁵⁶⁾ 반사제주의(anticlericalism; Antiklerikalismus)는 루터가 자신의 만인 제사장직 교리에서 강력하게 피력한 사상이다.⁵⁷⁾ 반사제

54) 김영재, 『한국기독교의 재인식』, 114; 김영재, “장로교회제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 『신학정론』 10/2 (1992, 12) 참조.

55)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해설』 (2014), 276(교회정치 제 339문).

56) 사실상 개혁교회 및 장로교회의 많은 교리들이 한편으로는 로마 가톨릭에 반대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제침례파에 반대하고, 더욱 나아가 루터파의 단점을 보완하는 성경적인 균형을 취한다. 그렇기에 개혁주의는 항상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위험이 상존한다.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제도가 장로교 정치이다.

57)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논한 논문으로 우병훈, “루터의 만인 제사장직 교리의 의미와 현대적 의의,” 209-35를 보라.

주의는 1520년대까지 널리 퍼지지는 않았다. 그 이전에도 교회 제도에 대한 비판은 있었다. 가령 1500년대에 이미 사제주의에 대한 산발적 비판들이 발견된다. 하지만, 반사제주의가 로마교에서 전통적으로 이해되던 성례론과 직분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널리 퍼지게 된 계기는 루터의 1520년의 세 작품들이다.⁵⁸⁾ 사제주의에 대한 루터의 비판은 이후에 지속적인 반사제주의의 흐름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⁵⁹⁾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원리와 함께 가는 반사제주의였다.

이러한 사제주의와 교권주의를 막기 위해서 장로교회 내에서 몇 가지 보완장치가 있어 왔다. 첫째, 교회의 중요한 결정 사항을 당회와 제직회에서 결의한다. 둘째, 평교인인 장로가 노회나 총회의 회원이 되어 각종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셋째, 노회에서 목사나 장로의 전형을 감독한다. 그러나 교회의 중요한 문제는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훈련을 마친 목사가 다루게 된다. 그렇기에 장로교회에서는 구조적 계층화 현상은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 장로교회는 이처럼 목사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구조 때문에 중세적 위계질서 구조로 빠져들 위험성을 안고 있다.

어떤 점에서 장로교회는 회중교회도 아니고 감독제도도 아니지만 회중제도 보다는 감독제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청교도들은 웨스트민스

58)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연대표를 기억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1520년 세 작품 『독일 귀족들에게』 (*An den christlichen Adel deutscher Nation*; 8월, 독일어로 작성), 『교회의 바벨론 포로』 (라틴어 제목=*De captivitate babilonica ecclesiae praeludium*, 독일어 제목=*Von der Babylonischen Gefangenschaft der Kirche*; 10월, 라틴어로 작성), 『그리스도인의 자유』 (*Von der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 11월, 독일어로 작성) 저술; 1521년 독일어 신약성경 번역; 1523년 직분론에 대한 저술; 1524년 토마스 뮌처의 급진적 종교 개혁 발상; 1525년 독일 농민 전쟁 발발; 1532년 『몰래 들어온 설교자들』 (*Infiltrating and Clandestine Preachers*)에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대한 해석 변화.

59) Wolf-Dieter Hauschild, *Lehrbuch der Kirchen- und Dogmengeschichte*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1), 2:25.

터 총회 시에 대토론(Grand Debate)에서 이미 지적하였다.⁶⁰⁾ 어쩌면 이런 내적 구조가 한국 교회의 계층화와 감독교회화의 여지를 남겨주었다고 볼 수 있다.

1.5. 한국 장로교 역사에서의 기원

장로교 정치원리는 “그리스도의 주권아래서 모든 지체와 지 교회들이 누리는 평등성(equality),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분자들을 통해서 운영되는 자율성(autonomy), 지 교회의 대표들을 통해 연합하는 연합성(unity)”으로 요약될 수 있다.⁶¹⁾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장로교 정치원리의 3대 특색은 “국가권력과 독립하여 교회의 직분자(특히 치리를 하는 직원으로서 목사, 교사, 치리 장로)에 의한 치리, 연합을 통한 교회의 통일성, 그리고 개체 목사와 장로의 평등성”을 꼽을 수 있다.⁶²⁾

이것을 정리하자면, 장로교 제도란, (1) 국가권력의 한계성을 지적해 주고, (2) 국가권력으로부터 교회의 독립과 자율성을 지켜가며, (3) 교회의 질서와 치리를 통해 바른 교회를 세워 가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⁶³⁾

60)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아래 문헌을 보라. Chad Van Dixhoorn, “Politics and Religion in the Westminster Assembly and the ‘Grand debate,’” in Robert Armstrong and Tadhg Ó Hanracháin, eds., *Insular Christianity: Alternative Models of the Church in Britain and Ireland, c.1570-c.1700, Politics, Culture, and Society in Early Modern Britain*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13), 129-48(제 7장).

61) 이하의 내용은 이상규, “교회정치,” 212-35를 많이 참조하였다.

62) 흔히 장로제의 제3의 특징이라고 일컬어지는 ‘평등성’은 1646년 12월에 발행된 『교회 정치의 신적 제정』(*Jus Divinum Regiminis Ecclesiastici*)에서는 언급이 없다. 도리어 그것은 스코틀랜드의 맥퍼슨과 미국의 찰스 핫지가 주창했다.

63) 이런 장로교 신앙과 제도가 근본적으로 부정될 때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사례가

역사적으로 보자면, 장로교회는 중세적 계층구조로서의 교회제도를 반대하는 성격과 교회의 자율과 독립을 강조하는 이중적 성격이 있다. 로마 가톨릭의 중세적 계층구조를 부정하는 보다 극단적인 방식은 회중교회와 같은 개교회주의를 택하든지, 아니면 교직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소위 자유교회(*free church*)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제도적으로 이런 양극단 모두를 지양(止揚)한다. 장로교 제도는 교회의 계층화를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교회주의나 자유교회적 경향을 지지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것이 장로교의 역사와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장로교회는 앞의 양극단 즉 교권주의와 개교회주의의 형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에서는 로마교적 계층화와 교권이 행사되고 있는가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 반대적 경향인 개교회적 경향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장로교회가 위계질서화 되고, 감독교회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뿐만 아니라 노회나 총회가 권력화 되어 교권을 행사하는가 하면, 노회들이 정치집단화 되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도 자주 발견된다. “한국교회 일각에서 나타나는 개교회적 경향은 따지고 보면 교회 구조의 계급화, 과도한 교권 행사 혹은 교회 조직에서의 정치집단화에 대한 반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은 매우 일리가 있다.⁶⁴⁾

이와 같은 한국 장로교회의 감독교회화 현상이나 교권의 행사는 다분히 한국적 문화토양에서 형성된 측면이 깊다. 그 주된 요인들을 다음의 몇 가지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⁶⁵⁾

17세기 언약파와 1930년대 한국에서의 신사참배 반대였다. 1930년대 이후 한국교회에서는 신사참배 반대는 3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국가권력이 개인의 신교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 곧 국가권력의 한계를 지적 하고, 둘째는 국가로부터 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며, 셋째, 바른 신앙을 지키며 교회적 질서를 지켜 가는 것이었다.

64) 이상규, “교회정치,” 214-15에서 인용.

65) 이상규, “장로교 정치제도와 한국에서의 교회정치,” 215-20의 여러 곳을 참조하여 요약함.

첫째,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게 되자 교회가 점차 교권화 되었다. 목사와 목사 및 장로와 장로 간의 평등관념이나 교회와 교회간의 평등의식이 희박해지고 계층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둘째, 한국에 장로교회가 소개된 이후 한국의 고유문화, 곧, 유교의 권위주의 혹은 신분주의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이로 인하여 장로교회에 로마교적 계층주의가 나타나고, 권위주의적 교권이 행사되었다.

셋째, 성경적 직분론에서 직분은 섬김의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장로교회에서 직분은 계급으로 이해되었다. 그리하여 평교인,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등의 순으로 서열의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넷째, 한국교회에는 개인주의도 강하지만, 한국 전통문화의 유산인 집단주의적 특성도 역시 강하다. 이런 집단주의가 조직 속에서는 중앙집권적 경향으로 나타나기 쉽다. 즉 어떤 조직체에서 결정권이나 집행권이 소수의 엘리트에게로 이양 내지 집중되어 버리기 쉽다는 것이다.

다섯째, 전통적으로 한국인들 사이에는 지역주의가 강한데, 한국장로교회도 이것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장로회는 1907년 독노회를 조직하였고, 1912년 총회를 조직하게 되는데, 이미 1920년대부터 교권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⁶⁶⁾

여섯째, 한국장로교회는 교권을 이용하여 자신의 자리를 유지한 역사가 있다. 이에 대한 가장 분명한 경우를 해방 이후 경남노회 분규에서 찾아볼

66) 구체적인 사례는 1920년대에 지연(地緣)에 바탕을 둔 교권 대립의 사례이다. 1900년부터 흔히 서북(西北) 지방으로 불리는 황해도와 평안도지역에서 교회성장은 타지역을 완전히 앞지르기 시작한다. 1905년의 경우 서북지방의 신자 수는 18,300명으로 전국의 23,300명의 80%를 점하고 있다. 서북지방의 압도적 성장 때문에 그 세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력화가 교권의 행사로 나타나게 되었다. 광안련, 『장로교회사 전회집』(조선야소교서회, 1918), 176-192; 민경배, 『교회와 민족』(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106; 민경배, “한국기독교의 사회선교,” 『부경교회사연구』 14 (2008. 5), 50을 참조하라. 이상규, “교회정치,” 221-22에서 증인.

수 있다. 이때의 교권적 대립과 갈등은 그 이후의 교회정치와 교권 행사에서 반복해서 나타난 사건들에 대하여 하나의 원류(原流)가 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시에 교권의 힘을 빌려 공적 회개를 거부했던 일은 한국교회에서의 치리 기능을 약화시키는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⁶⁷⁾

일곱째, 한국장로교회는 신학적인 이유로 분열했다기보다는 다른 요인으로 분열했다. 많은 분열들이 신학적 혹은 신앙고백적 동기보다는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분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⁶⁸⁾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노회가 자신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히 행하는 것이다. 이하에서 노회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논구(論究)하고자 한다.

2. 노회의 역할

2.1. 목사 및 장로와 관련한 역할

노회의 역사에서 살펴보았을 때에 노회의 발생의 이유는 (1) 목사를 임직하고, (2)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며, (3) 교리적 순결 및 도덕적 기강을 지키고, (4) 교회행정과 권징을 통일하며, (5) 개체교회 및 선교를 돕기 위해서

67) 윤은수는 『개혁파신학전통에서 본 치리』(계명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해방 후 공적 회개가 좌절된 것이 교회 치리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였음을 잘 지적하였다. 이상규, “교회정치,” 229에서 중언.

68) 1953년의 기강의 분열이 그러했고, 1959년 합동과 통합의 분열이 그러했다. 이때의 분열의 배경, 원인과 전개, 결과에 대해서는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910-1960』(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969-1014를 참고할 것, 이상규, “교회정치,” 233에서 중언.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사를 기초로 하고 고신헌법 제 132조의 노회의 직무를 참조하면, 노회의 역할은 크게 (1) 목사 및 장로와 관련한 역할, (2) 개체교회 및 당회와 관련한 역할, (3) 총회와 관련한 역할을 볼 수 있다.

노회의 목사 및 장로 관리는 신학생 선발, 교육, 안수, 목사 및 장로의 임직, 재교육, 개척, 선교사 파송 등으로 나뉜다. 노회는 자신의 구역 안에 있는 당회, 개체교회, 목사, 강도사, 전도사 목사후보생, 소속기관 및 단체를 총찰(總察)한다. 여기서 ‘총찰’이라는 말은 각 당회가 위임한 권위에 근거하여 노회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구역 내에 있는 당회, 개체교회, 목사, 강도사, 전도사 목사후보생, 소속기관 및 단체를 다스리며 돌아보고 살피는 것을 뜻한다.⁶⁹⁾

이 중에서 노회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1) 목사후보생의 고시, 교육, 이명 및 권징의 처리, (2) 목사의 자격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및 권징의 관리와 처리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개체교회 장로의 선택, 임직 및 자격고시 관장도 역시 중요하다.

노회가 목사 및 장로와 관련한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노회는 정기적으로 신학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요즘은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한편으로 목회자는 신학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다. 책들도 많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목회자는 적절한 신학 강좌를 선별할 기준이 없으며, 동시에 그것을 통해 여러 의사를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목회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노회는 목사 및 장로가 신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기적 신학 교육을 제공함이 바람직하다.

69)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해설』 (2014), 290(교회정치 제 372문).

둘째, 노회는 신학생 발굴과 관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특별히 요즘처럼 신학생 지원이 적은 시대에는 노회가 앞장서서 개체교회의 우수한 재원을 신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얼마 가지 않아 교회는 좋은 목사 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셋째, 노회는 목사와 장로의 아름다운 동역을 돕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한다. 개체교회에서 목사와 장로 사이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며, 목사와 장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행사를 마련하고 제공해야 한다. 당회가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하기 때문이다.

2.2. 개체교회 및 당회와 관련한 역할

교회 관리는 개체교회가 성경적 원리와 교단법에 따라 잘 세워져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다. 아울러 노회는 개체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조직을 관장한다.

구체적으로 노회는 (1) 각 당회에서 제출한 건의, 청원, 문의(질의) 및 진정의 접수처리, (2) 각 당회에서 제출한 소원, 상소 및 위탁판결의 접수처리, (3) 각 당회의 당회록 및 미조직교회의 행정록의 검사와 그 합법 여부 표시, (4) 진리와 권징에 관한 해석, (5)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위한 개체교회 시찰, (6) 개체교회 및 미조직교회의 목사청빙 관장, (7) 개체교회와 미조직교회의 전도사업의 지도권장과 교육 강화로 인한 영적 유익 도모, (8) 개체교회 및 미조직교회의 재정 및 관리의 방침 지도 등이 있다.

노회가 개체교회 및 당회와 관련한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노회는 교회 질서와 관련한 중요한 지침서나 사례 연구서 등을 제시함이 좋다. 특별히 평교인들은 교회의 질서에 대해 매우 무지하므로, 관련된

책자가 있을 경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목회자에 대한 불만 표출, 은퇴 목회자의 사례에 대한 경우.

둘째, 노회는 개척 교회와 미자립 교회와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목회자의 경우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례로 겨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노회는 이런 상황들을 잘 살펴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대에 함께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노회는 이단들로부터 개체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기 하기 위하여 지침서나 강좌나 기준이 되는 동영상 강의 등을 제시함이 바람직하다.

2.3. 총회와 관련한 역할

노회와 총회와의 관계는 총회 총대를 파송하고 총회에 안건을 건의하며 총회의 결의 사항을 전달하고 시행, 감독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1) 총회제출의 청원, 건의, 문의, 진정, 소원, 상소 및 위탁판결의 처리, (2) 총회제출의 노회상황보고, (3) 총회총대선출, (4) 총회지시실행, (5) 개체교회와 산하기관의 재산권 문제 처리 등이다.

노회가 총회와 관련한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노회의 임원들은 총회에 다양한 의견들이 전달되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매번 같은 총대가 나가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노회가 노력해야 한다.

둘째, 총회에서 상정할 수 있는 중요한 교회적, 신학적 문제들을 고민해야 한다. 노회가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회는 총회의 신학적 결정들을 개체교회의 평교인들까지도 잘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결론: 노회의 사명

헤르만 바빙크는 교회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며, 그것은 지배하고 강압적인 권세가 아니라 단지 섬기고 봉사하는 권세라고 말하였다.⁷⁰⁾ 노회의 존재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노회가 아래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다.

첫째, 노회는 개체교회(개척교회, 선교지 교회 포함)를 돕기 위해서 존속한다. 노회는 소속 교회들의 통일과 화목과 협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교회개척과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파되도록 노력한다.

둘째, 노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체교회를 지도하기 위해 존속한다. 노회는 이단 및 불건전한 교리나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며, 개체교회들의 교리와 삶의 순결을 위해 노력한다.

셋째, 노회는 목사를 임직하고 적절한 임지에 추천하며,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며, 목사직과 장로직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존속한다. 아울러 노회는 장로를 임직하고 목사와 장로의 건전한 협력과 상호 존중 및 신뢰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노회는 목사 및 장로들을 위한 신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존속한다. 노회는 소속 교회의 신학적, 신앙적 성숙을 책임지는 곳이 되도록 노력한다.

다섯째, 노회는 지역교회와 총회 사이의 중간 연결고리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존속한다. 노회는 지역교회의 구체적인 필요를 총회에 전달하며, 총회의 결정을 지역교회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70) Bavinck, 『개척교의학』, 4:511.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노회는 장로교 교회 정치체도의 꽃이며, 심장이다. 노회는 어머니와 같이 개체교회를 돌본다. 노회는 아버지와 같이 개체교회를 지도한다. 장로교회는 노회의 수준만큼 성숙해 왔다. 따라서 노회의 각 구성원들을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소임에 충실해야 한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이다.

참고문헌

- 곽안련. 『장로교회사 전회집』. 조선야소교서회, 1918.
- 김영재 편저. 『기독교 신앙고백』. 수원: 영음사, 2011.
- _____. “장로교회제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 『신학정론』 10/2 (1992, 12).
- _____. 『한국기독교의 재인식』. 서울: 엠마오, 1994.
-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해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2014.
- 민경배. “한국기독교의 사회선교.” 『부경교회사연구』 14 (2008. 5).
- _____. 『교회와 민족』.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910-1960』.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 박윤선. 『헌법주석』. 영음사, 1997.
- 배광식. 『장로교 정치원리와 치리제도 형성에 관한 역사적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 우병훈. “루터의 만인 제사장직 교리의 의미와 현대적 의의.” 『신학논단』 87 (2017): 209-35.
- _____. 『처음 만나는 루터』. 서울: IVP, 2017.
- 윤은수. 『개혁과신학전통에서 본 치리』. 계명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 이상규. “교회정치.” 『고신신학』 11 (2009): 197-235.
- 임영효. 『사도행전에서 선교와 교회성장』. 서울: 프라미스키퍼스, 2013.
- 임종구. 『칼빈과 제네바 목사회』.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5.
- Bavinck, Herman. 『개혁교의학』. *Gereformeerde Dogmatiek*. 박태현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 Beale, G. K. 『신약성경신학』. *A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김귀탁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3.
- Beeke, Joel and Mark Jones. 『칭교도 신학의 모든 것』. *A Puritan Theology*.

- 김귀탁 역. 부흥과 개혁사, 2015.
- Calvin, John. 『기독교강요』. *Institutes*.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6.
- Dennison, Jr., James T. Compiled, *Reformed Confessions of the 16th and 17th Centuries in English Translation: Volume 2, 1552-1566*. Grand Rapids, MI: Reformed Heritage Books, 2010.
- Dixhoorn, Chad Van. "Politics and Religion in the Westminster Assembly and the 'Grand debate'." In *Insular Christianity: Alternative Models of the Church in Britain and Ireland, c.1570-c.1700, Politics, Culture, and Society in Early Modern Britain*, edited by Robert Armstrong and Tadhg Ó Hanracháin, 129-48.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13.
- Hauschild, Wolf-Dieter *Lehrbuch der Kirchen- und Dogmengeschichte*.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1.
- Lechler, G. V. *Geschichte der Presbyterian- und Synodalverfassung seit der Reformation*. Leiden: Noothoven van Goor, 1854.
- McGrath, Alistair. *A Life of John Calvin: A Study in the Shaping of Western Culture*. Oxford: Wiley-Blackwell, 1993.
- Moo, Douglas. 『로마서 - NIV 적용주석』. *Romans (NIVAC)*.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2011.
- Muller, Richard A.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Drawn Principally from Protestant Scholastic Theology*, 2nd ed. Grand Rapids, Mich.: Baker Book House, 2017.
- Ridderbos, H. N. *Commentaar op het Nieuwe Testament, Pastrale Brieven*. Kampen: Kok, 1967.
- Spijker, Willem van't. 『칼빈의 생애와 사상』. *Calvin: Biographie und Theologie*. 박태현 역. 부흥과 개혁사, 2009.

- Van Dam, Cornelis. 『성경에서 가르치는 장로』. *The Elder*. 김현수, 양태진 공역. 서울: 성약출판사, 2012.
- Van Raalte, Theodore G. “The French Reformed Synods of the Seventeenth Century.” In *The Theology of the French Reformed Churches. From Henri IV to the Revocation of the Edict of Nantes*, edited by Martin I. Klauber, 57-97. Grand Rapids, MI: Reformed Heritage Books, 2014.
- Weber, Otto. 『칼빈의 교회관』.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 역. 서울: 이레서원, 2001.
- Wells, Paul. “Church Government in French Churches in the 17th Century.” 『갱신과 부흥』 17 (2016): 122-49.